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51
----------	-------

발의연월일 : 2025. 8. 25.

발 의 자 : 이훈기 · 박홍배 · 이상식
김기표 · 최혁진 · 이용우
이재관 · 김주영 · 송재봉
이병진 · 신장식 · 김문수
김 윤 · 김준혁 · 김용만
박용갑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적 방송통제 · 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 · 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영상 플랫폼의 공적 기능 제고와 시

청자 권익 향상, 민주적 여론형성의 토대가 되는 방송의 공공·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한 방송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공공미디어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미디어위원회는 방송의 정치·경제적 독립성 보장과 시청자 주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미디어위원회는 방송의 공공·공익적 가치 실현, 시청자 권익 증진, 민주적 여론 형성 기여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익성 준수에 관한 규제·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인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언론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미디어 콘텐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미디어 콘텐츠 등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또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언론 또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
2.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부위원장인 위원 1인과 상임이 아닌 위원(이하 “비상임위원”이라 한다) 1인
3.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

상임위원 1인

4.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1인

5. 대법관회의의 합의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1인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은 위원의 임기 종료 21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국회 구성 또는 개회 불가, 국회의장 선출지체, 대법관 임명의 지체 또는 대법원장 유고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체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경우에도 같다.

⑤ 대통령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경우에도 같다.

⑥ 비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심의·의결사항 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6호의 사항은 처리할 수 없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비상임위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재허가, 승인·재승인, 변경허가·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 시청자 권익 증진 및 이용자 피해 보호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4. 방송사업자 간 또는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허가 및 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재승인·변경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동영상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2.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4.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5.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6. 제18조에 따른 미디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8.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공공·공익성 보장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방송 및 방송과 정보통신 융합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방송 및 방송과 정보통신 융합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2.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3.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위원(이하 “전체위원”이라 한다)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6호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전체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이외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미디어심의위원회

제18조(미디어심의위원회의 설치)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유통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미디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인 위원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임명 등) ①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

이라 한다)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관련분야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정보통신서비스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 추천 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2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법관회의의 합의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교섭단체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4명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 추천은 임기 종료 21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장 선출 지체,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의 지체

또는 개회 불가, 대법관 임명의 지체 또는 대법원장 유고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구성 심의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궐 심의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경우에도 같다.

④ 대통령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궐 심의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경우에도 같다.

⑤ 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심의위원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그 외 상임위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 호선한다.

⑥ 상임이 아닌 심의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 심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심의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24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는 “제23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들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5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비실시간 화상·영상매체를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관한 심의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의 불법성에 관한 심의
 7.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제26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는 각각
전체 구성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구성 심의위
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
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화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구성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
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
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
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
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제28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5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5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3. 제25조제6호를 심의하기 위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관한 심의규정

제29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8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5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같은 항 제2호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미디어콘텐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장은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위원회 또는 미디어콘텐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

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미디어콘텐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임인 위원 외의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 제26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6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33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5조제9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는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승계사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허가·승인·동의·인가 그 밖의 행위와 각종 신고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공미디어위원회 또는 미디어콘텐츠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공공미디어위원회 또는 미디어콘텐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미디어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와 재산,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

에 따른 미디어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공미디어위원회” 또는 “공공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디어심의위원회” 또는 “미디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